

# 01

## 계획하기

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기본 공간 구성과 행정적 기초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.

---

|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1) 위치 선정하기          | 012 |
| 2) 공간 구성과 출입구 동선 분리 | 014 |
| 3) 적절한 규모           | 017 |
| 4) 예산 계획하기          | 019 |
| 5) 계획안 작성하기         | 020 |

# 1) 위치 선정하기

화장실은 **주출입층** 혹은 **주요 보도에 1개 이상 위치**하도록 하며, 만약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**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 쉽게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 등으로 연결되어** 있어야 한다.



- 건축물, 교통시설 내 설치되는 화장실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주출입구와 복도 인근이나 관리사무실 부근에 설치되도록 한다.
- 공원, 광장 등 야외에 설치되는 화장실의 경우 주요 보도와 연결되도록 하며, 사방에서 쉽게 식별이 가능한 곳에 위치시키도록 한다.
- 행사나 활동이 잦은 광장 인근과 관리사무소, 주차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과 잘 연계되도록 설치한다.
- 출입구가 외부에서 명확히 보이도록 위치해야 하며, 기둥이나 안내사인, 현수막 등 구조물과 설치물로 가려지지 않아야 한다.

## ① 관리사무실 인접

위급 상황 시 대응이 편하고,  
쾌적한 환경 조성에  
도움을 줄 수 있음.

## ② 주출입구와 인접

출입구와 인접한 경우  
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 
이용이 가능함.  
(개방화장실 운영 용이)

## ③ 휴게시설과 연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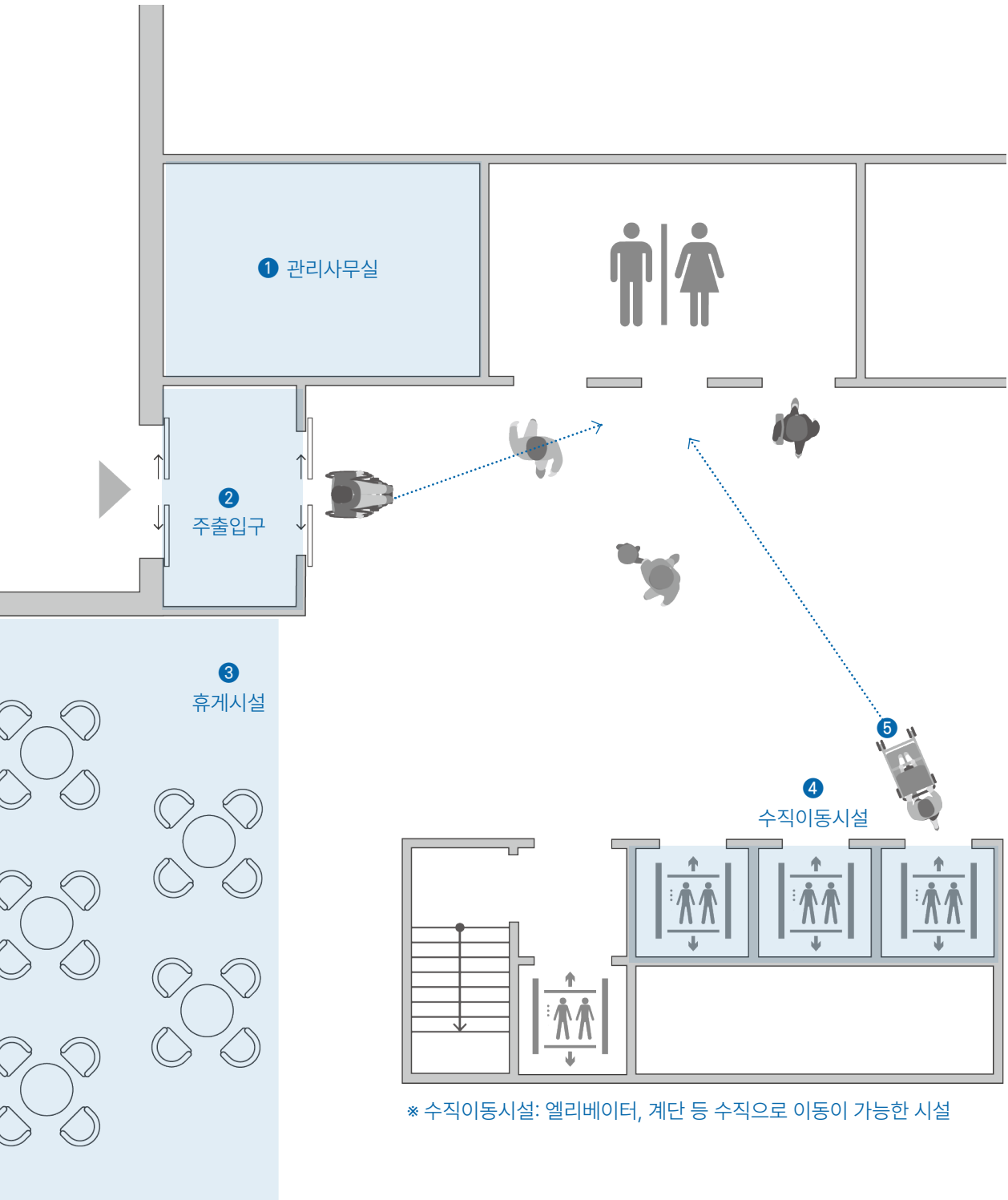
화장실 출입구 자연 감시  
기능 확보가 가능하며,  
화장실이 인근에 위치하여  
이용이 편리함.

## ④ 수직이동시설 연계

여러개의 층이 있을 경우  
화장실 사용량을 쉽게  
분산시킬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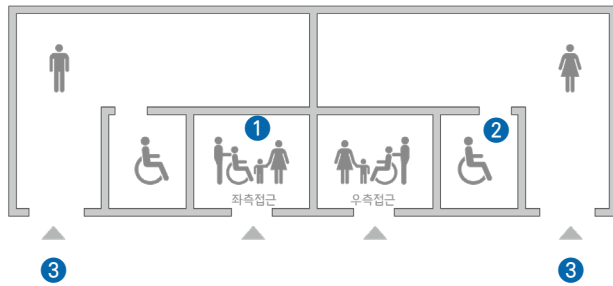
## ⑤ 쉽게 식별이 가능한 열린공간 확보

구조물, 설치물로 가려지지  
않는다면, 쉽게 찾을 수 있음.



## 2) 공간 구성과 출입구 동선 분리 CP

남녀화장실, 남녀장애인용 화장실, 가족배려 화장실로 구성되어야 하며, 남녀화장실은 출입구가 확실히 분리되도록 설치해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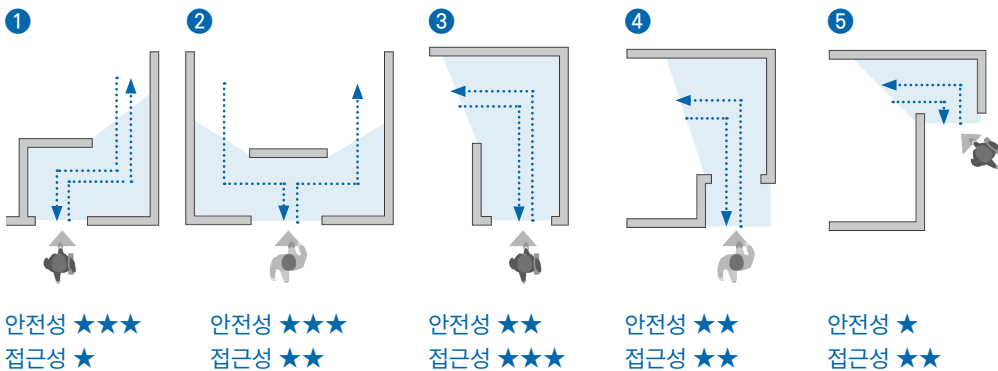
### 1 가족배려 화장실 설치

1개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내부 설비 등을 왼손잡이용과 오른손잡이용으로 설치

### 2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구는 복도와 면하지 않을 것

### 3 남녀화장실 출입 동선 분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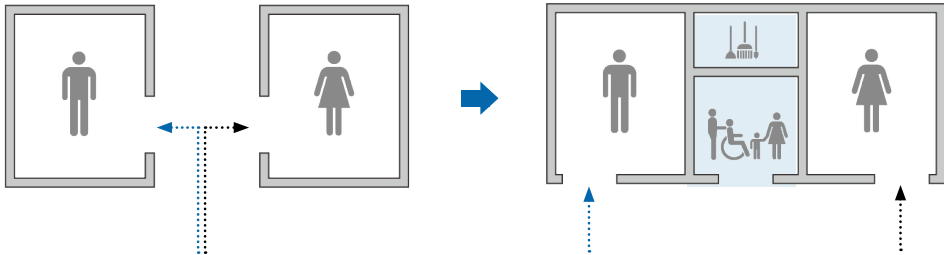
- 남녀화장실은 출입구가 확실히 구분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, 복도나 보도에서 통행하는 사람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.
- 출입문 설치는 지양하며, 구조상 내부가 비칠 경우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다. 출입문 설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'2장의 출입문(49p)' 항목을 참고한다.
-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화장실 내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, 별도로 출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출입구가 바로 복도와 면하지 않도록 한다.
- 가족배려 화장실은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남녀화장실의 출입구와 분리하여 설치하며, 어느 곳에 치우쳐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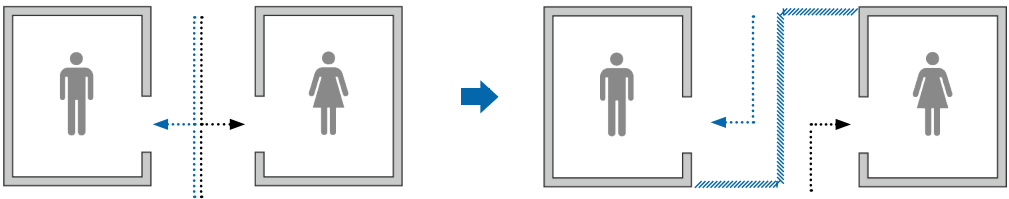
## ⚠ 리모델링 시 시야차단 및 동선분리 방안

- 출입 동선을 개선하는 경우 출입구가 분리되도록 중간에 가벽을 설치하거나 휴게공간, 가족화장실, 어린이화장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- 남녀화장실 사이 간격이 3m 이상일 경우 가운데 가벽을 세워 출입구를 분리하고 명확한 안내사인을 통해 출입구가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.
- 남녀화장실 사이 간격이 3m 이하이거나 분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바닥, 벽 사인을 통해 남녀공간을 구분한다. 또한 CCTV, 안심 거울 등 범죄예방 장치 등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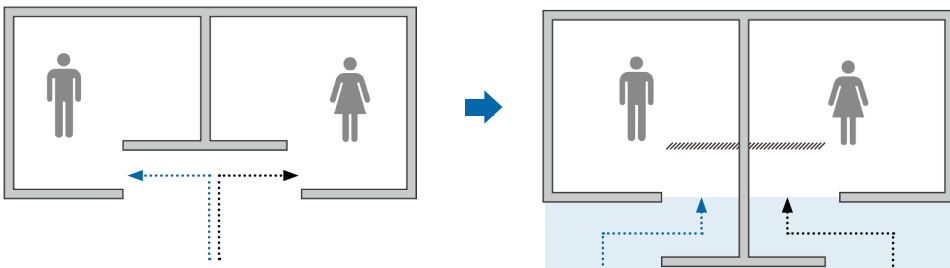
### ①-1 출입구 위치 변경이 가능하고, 남녀화장실의 출입구 간격이 3m 이내의 경우 적용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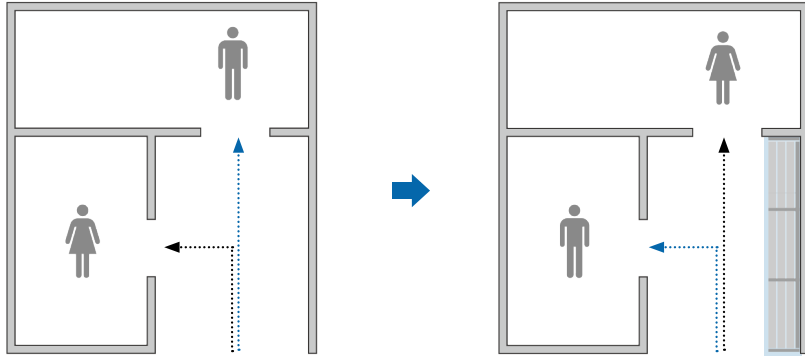
### ①-2 출입구 위치 변경이 불가능하고, 남녀화장실 출입구 간격이 3m 이상의 경우 적용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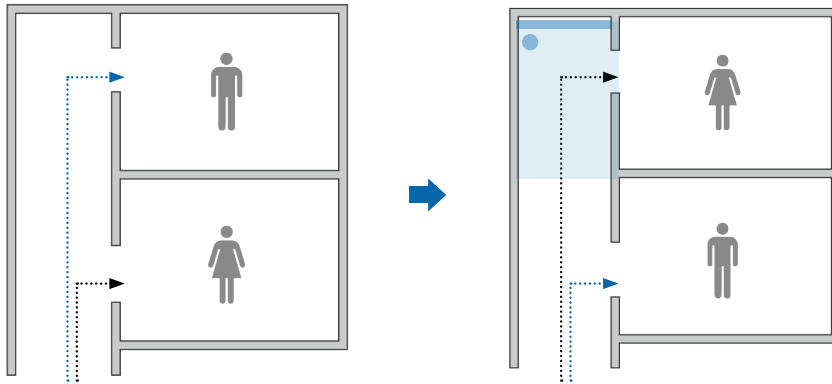
### ② 출입구 위치 변경이 불가능하고, 남녀화장실 출입구 간격이 3m 이상의 경우 적용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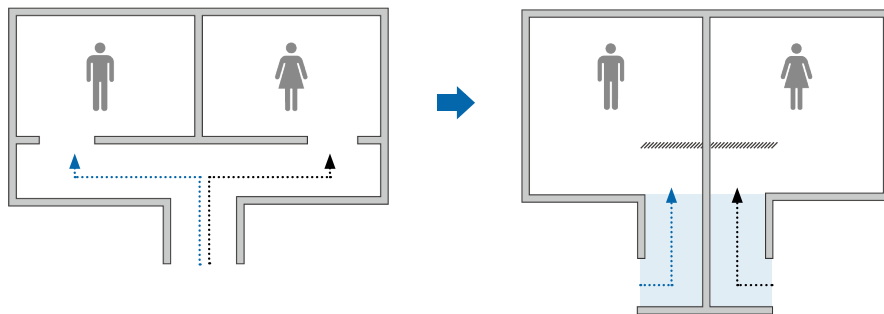
- ③ 여자화장실을 안쪽에 배치하여 남자와 겹치는 동선을 최소화하며, 휴게공간 등을 배치하여 자연 감시 기능을 확보



- ④ 여자화장실을 안쪽에 배치하여 남자와 겹치는 동선을 최소화하고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 여자화장실 앞 바닥재를 변경하고, CCTV, 안심 거울 설치를 권장



- ⑤ 남녀화장실 출입구 간격이 3m 이상의 경우 기존 가벽을 밖으로 이동하여 동선 분리



### 3) 적절한 규모 UD

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시설의 배치 수량을 먼저 확인하고, 화장실 필요 면적을 계산해야 한다.



- 여성은 남성보다 화장실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, 여자화장실의 면적은 남자화장실 보다 크게 계획한다.
- 대변기 부스는 일반형, 확장형, 보조형, 장루형, 영유아동반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, 다양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.
- 통로의 폭은 최소 1.2m 이상으로 하며, 가능한 경우 1.5m 이상으로 한다.
- 소변기, 세면대는 일반형과 보조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, 보조형은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한다.
- 세면대는 선반, 가방/지팡이 걸이 등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.
- 여성화장실은 파우더룸 배치 시 세면대 인근 공간을 활용하여 배치한다.

공중화장실 이용시간 \*출처: 연구진 설문조사



2.5min



3.8mi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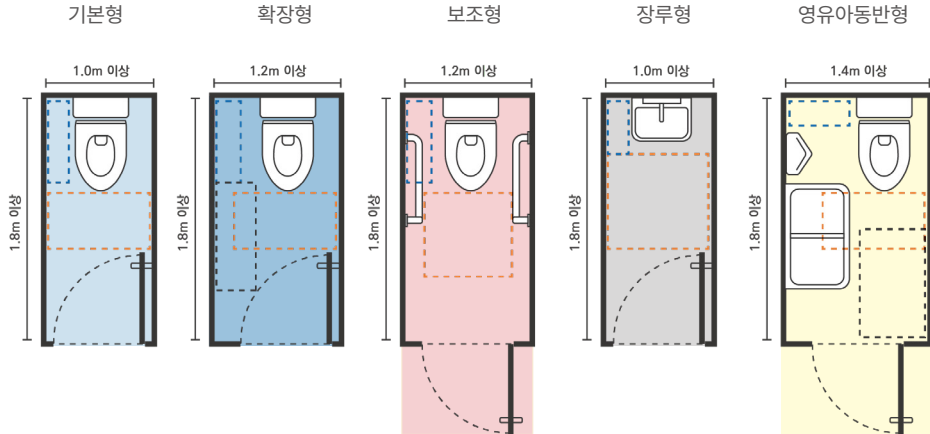
평균 사용시간은  
여성이 남성보다  
약 1.5배 이상 김

####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(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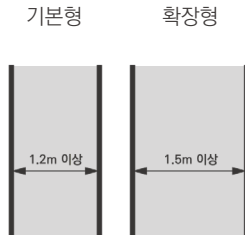
-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,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·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·소변기 수의 1.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## ⚠ 대변기 부스, 소변기, 세면대, 통로의 적정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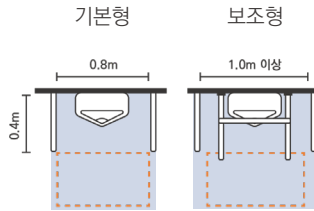
### ① 대변기 부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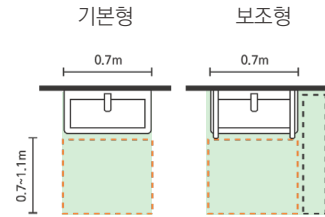
### ② 농도



### ③ 소변기



### ④ 세면대



## ⚠ 조합 예시

대변기 부스는 기본형 2개, 보조형 2개, 장루형 1개, 확장형 1개, 영유아 동반 1개, 장애인용 1개로 구성하고, 세면대는 4개에 비품실까지 조성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배치해 볼 수 있다.



부스면적은 17.9m<sup>2</sup>  
세면대 면적은 5.5m<sup>2</sup>  
비품실면적은 3m<sup>2</sup>  
복도 면적은 16.9m<sup>2</sup>로  
총 43.3m<sup>2</sup>가 필요하구나!





## 4) 예산 계획하기

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 **평균 1.2배 정도 추가 예산을 확보**해야 하지만,  
**유지 및 수선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** 장기적인 관점에서 **절약이 가능하다**.



- 예산은 설계비, 시공비, 자문비, 자산취득비, 일반수용비 등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계획한다.
- 설계비는 일반적으로 총공사비의 3~8% 비용으로 책정한다. 유니버설디자인 설계를 진행할 때에는 지침에 맞는 설계뿐만 아니라 안내사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범위에 맞는 설계비를 책정해야 한다.
- 시공비는 자재비, 직접인건비, 제경비, 기술료, 감리비 등이 포함된다. 화장실 공사는 기본 시설 공사 외 토목공사비, 전기배선, 배관, 정화조 공사 등 필요한 공사들이 현장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.
- 예산 계획 시 조성 후 운영까지 고려하여 국가, 시·도,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을 확인한다.

###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(보조금의 지급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·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7조(공중화장실 설치기준) 제1항부터 제5항까지, 제7조의2(어린이용 대·소변기 설치) 및 제7조의3(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)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.

## 5) 계획안 작성하기

시설 개선을 위해 타 부서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고, 자문, 심의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산정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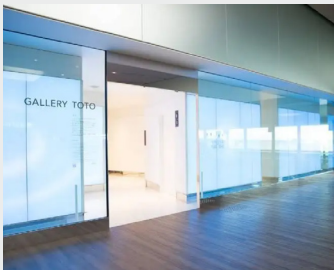
- 공중화장실 신규 조성 및 개선을 담당하는 부서는 건축 담당 부서 외에 위생과, 물재생관리과, 복지과 등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.
- 기존 시설을 개선할 경우 시민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해당지역에 가장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파악하면 개선 후 만족도가 높다.
  - \* 만족도 조사지는 5장 '3) 운영점검표 서식'에서 확인 가능
- 설계 후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, 건축위원회 심의, 도시공원위원회,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등을 받아야 하므로 기간은 여유롭게 산정해야 한다.
  - \* 컨설팅, 심의 관련사항은 2장 '참고하세요'에서 참고 가능

참고하세요!

### 유니버설디자인 화장실 사례를 알아봐요! UD

- 나리타 공항 제2터미널 국제선 출발 중앙 홀의 화장실은 2015년 TOTO의 리모델링으로 세련되고 편안한 갤러리 형식 화장실로 변신했습니다. 이 프로젝트에서는 갤러리 형식의 화장실을 도입하여 각각의 화장실을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. 다목적 및 수유실은 성별 중립적으로 위치하며, 양쪽에는 각각 4개의 방으로 나누어진 남성 및 여성 화장실이 있습니다. 사용자는 선호하는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, 미래를 대비하여 물절약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1.2리터로 소변기의 물 소비를 줄였습니다.

자연감시가 가능한 화장실 출입구



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화장실 내부 지도



화장실 사용중 표시등

